

별첨 가산점

□ 사회형평적 가산점(각 전형별로 적용)

구분	주요내용	배점
취업지원 대상자	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- 지원자 본인 명의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 - 증명서에 기재된 가산율(5~10%)에 따라 가산점 부여	5~10점
기초생활수급자	·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지원자 본인 명의의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	5점
북한이탈주민	· 「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- 지원자 본인 명의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	
다문화가족자녀	·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- 가족관계증명서,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(전 국적 포함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다문화가족 자녀임을 증빙 가능한 자	3점
경력단절여성	·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- 가족관계증명서, 경력증명서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경력단절여성임을 증빙 가능한 자	

□ 가산점 적용기준

- 가산점 계산방법 : 취득점수 + 사회형평적 가산점
- 전형별 점수에 추가 가산하여 적용하며, 가산점은 합산 최대 10점 초과 불가
-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분야별 합격예정인원의 30% 이내로 제한 함(인원계산 시 소수점이하는 버림, 단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제외하고도 합격선 이상인 경우에는 30% 상한에서 제외)

※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미부여(국가유공자법 제31조)